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9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0월 10일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3년 11월 4일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3년 11월 7일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나.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되었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현재 유예시점인 2014. 1. 1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함.
(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936호 부칙 제2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2013. 9.25)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용 우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현행대로 대행 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업무 ‘단서’ 및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서 :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경과조치 :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 전환시점(2014.1.1) |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사업이, 예산절감효과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에 따라, 대행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
-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근로자의 낮은 임금부분은 장기과제 검토대상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대행사업을 운영한 결과로는 운영상의 부작용 사례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으나,
-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